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
----------	-----

제출년월일 : 2000. .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 또는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특정인을 위한 사무 등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무에 대해 원가보상 차원에서 그 처리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범위와 요율을 정하고 수수료수입을 증대코자 함

- 1)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에 관한 증명
- 2) 도로법제40조에 의한 사도개설 및 축조변경허가신청·도로부지 점용 허가
- 3) 부동산증개업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부동산증개업자 등록, 신청 등

2. 주요골자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의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의 별표 1을 개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필함(군보게재 : 2000. 11. 25 ~ 2000. 12. 14)
-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증 (증명)란의 11.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세목별 납세증명	1통	400원	
○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통	400원	
○ 세목별 과세증명	1통	400원	
○ 징수유예 증명	1통	400원	

별표1증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란의 6.건설관계 중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단, 점용료가 300,000이하인 경우”는 삭제하고 “○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란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 등록(중개업자)분사무소 설치, ○부동산중개업자 등록(법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	1건	1,000원	
○ 부동산중개업자 등록(중개업자), 분사무소설치	1건	5,000원	
○ 부동산중개업자 등록(법인)	1건	1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증명)							
11.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납세증명	1통	<u>300원</u>		(증명)			
◦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통	<u>300원</u>		11.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1통	<u>300원</u>		◦ 세목별 납세증명	1통	<u>400원</u>	
◦ 징수 유예증명	1통	<u>300원</u>		◦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통	<u>400원</u>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6. 건설관계							
◦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	1건	<u>500원</u>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 가, 기타)점용허가 <u>단, 점용료가 300,000이하인 경우</u>	1건	<u>점용료의 1/100</u>		6. 건설관계			
◦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1건	<u>500원</u>		◦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	1건	<u>1,000원</u>	
<u><신설></u>							
<u><신설></u>							
(현행과 같음)							
◦ 부동산중개업자등록(중개 업자), 분사무소 설치							
◦ 부동산중개업자등록(법 인)							

개정 사유

1. 현행 수수료는 해당 사무처리 비용의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

종류 지역명	지방세에 관한 증명					건설 관계			
	세목별 납세증명	납세 완납 미(비)과 세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유예 증 명	사도개설 축조변경 허 가	도로부지 점용허가	부동산 중 개업자 등록(법인)	부동산 중 개업자 등록(개인)	
수수료대비 (B/A)	225%	225%	225%	225%	4903%	비현 실적	국가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항목으로		
현행수수료 (A)	300	300	300	300	500	점용료의 1%	기존가격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		
원 가 (B)	675	675	675	675	24,515	24,515	(2000.		

2.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요율이 낮음

(기준: 1999년)

(단위: 원)

종류 지역명	지방세에 관한 증명					건설 관계			
	세목별 납세증명	납세 완납 미(비)과 세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유예 증 명	사도개설 축조변경 허 가	도로부지 점용허가	부동산 중 개업자 등록(법인)	부동산 중 개업자 등록(개인)	
평균대비 수수료(B/A)	58%	60%	60%	38%	27%				
평균비용(A)	520	500	500	795	1,830				
평창군(B)	300	300	300	300	500				
원주시	500		500						
화순군	600	600	600	700	1,700				
서초구		300	300	300	550				
광주군	600	600	600	2,000	3,000				
단양군	400	400	400	400	800				
괴산군	400	400	400	400	700				
연천군	500	500	500	2,000	5,000				
여주군	500	500	500	500	1,000				
수원시	1,000	1,000	1,000	1,000	4,500		9,000	20,000	
양평군	400	400	400	350	550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제129조 (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①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사 도 법

제4조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도법 시행령

제2조 (개설허가신청)

①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공 및 준공 예정연월일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계획도면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서·경비예산 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세법

제38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12.28>
-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99.12.28> [전문개정 74.12.27]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납세증명서)

법 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99.12.31]

제20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99.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소요수량
- ② 납세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한다. 이 경우 개인에 있어서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99.12.31>

관계법령 발췌서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중개업의 등록 등)

- 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11조 (중개사무소의 설치등)

- ①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 ② 법인인 중개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 ④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 ⑤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9.12.30, 99.3.31>

관계법령 발췌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3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신청)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 군수 ·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1.4.23, 94.4.9, 94.12.23, 99.6.30>
-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90.4.26, 99.6.30>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 군수 ·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0.7.12, 94.6.10, 99.7.6, 2000.7.29>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다)
 3.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4. 반영함판 사진
 - 4의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목의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가. 법 제7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관계법령 발췌서

공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 <2000.7.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중개업자
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7.12, 99.7.6>

1. 법인인 중개업자
2. 개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
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
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0.7.12, 99.7.6>